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일부개정	2013. 6. 11	조례	제1297호
일부개정	2015. 7. 28	조례	제1479호(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 6. 23	조례	제1666호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 6. 30	조례	제2152호
일부개정	2024. 12. 6	조례	제25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용인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시장 소속의 기관에 소속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설치·운영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용인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 6. 30>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6. 23]

[전문개정 2021. 6. 30]

제4조 삭제 <2021. 6. 30>

제5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설치근거,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운영실적,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위원회 존치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활동내역 및 검토결과를 점검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① 삭제 <2021. 6. 30>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 6. 23>

[제목개정 2021. 6. 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등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1. 시 공무원, 시의원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사무를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15. 7. 28, 2017. 6. 23, 단서삭제 2021. 6. 30>

⑤ 시장은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0>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17. 6.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3]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단서삭제 2024. 12. 6>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3. 6.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6. 11>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6. 11, 2021. 6. 30>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1, 2021. 6. 30>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원격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12조 삭제 <2017. 6. 23>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 회의·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21. 6.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조례번호	조례명	개정조항	부서명
제1159호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보관
제913호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담당관
제1194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	행정과
제991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	행정과
제1195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행정과
제1170호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행정과
제1217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5조	정책기획과
제1171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	정책기획과
제1117호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정책기획과
제993호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8조	정책기획과
제822호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재정법무과
제1143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제3조	재정법무과
제1162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	재정법무과
제1163호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	재정법무과
제1146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4조	세정과
제1147호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세정과
제1002호	용인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14조	정보통신과
제1109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제15조	정보통신과
제1198호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	제15조	문화예술과
제1076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7조	문화예술과
제630호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9조	문화예술과
제1149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문화예술과
제809호	용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조의4	문화예술과
제1148호	용인시 문화상 조례	제9조	문화예술과
제1035호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	문화예술과
제1038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	문화예술과
제1165호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	관광과
제1144호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관광과
제1036호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교육체육과
제1224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교육체육과
제922호	용인시 관·학 대외협력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	교육체육과
제1137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복지위생과
제 679호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7조	복지위생과
제1094호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복지위생과
제1098호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복지위생과
제1199호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9조	노인장애인과
제1005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노인장애인과
제 818호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노인장애인과
제116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8조	노인장애인과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69호	용인시 조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제18조	노인장애인과
제897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	가족여성과
제889호	용인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가족여성과
제1249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가족여성과
제1245호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32조	가족여성과
제696호	용인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가족여성과
제860호	용인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7조	지역경제과
제1062호	용인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	지역경제과
제1124호	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역경제과
제1167호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기업지원과
제1126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기업지원과
제1050호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기업지원과
제720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기업지원과
제899호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제8조	기업지원과
제721호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기업지원과
제1017호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농업정책과
제957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환경과
제1133호	용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4조	환경과
제981호	용인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9조	환경과
제110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청소행정과
제1106호	용인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청소행정과
제1220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71조	도시계획과
제1010호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	도시개발과
제1234호	용인시	건축 조례	제14조	도시디자인과
제1113호	용인시	경관 조례	제20조	도시디자인과
제1055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7조	도시디자인과
제1079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8조	도시디자인과
제1096호	용인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도시디자인과
제1186호	용인시	주택 조례	제28조	주택과
제 853호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주택과
제 852호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주택과
제1112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2조	토지정보과
제623호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10조	토지정보과
제1114호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	건설과
제1037호	용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7조	건설과
제960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교통정책과
제1145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교통정책과
제788호	용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	하천방재과
제884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8조	자원육성과
제1228호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자원육성과
제904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자원육성과

제1188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2	기술지원과
제890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9조	치인구보건소
제958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동부도서관
제975호	용인시 평생교육 조례	제10조	여성회관
제959호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상하수도사업소
제1084호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의회사무국
제1238호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	가족여성과
제1247호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	가족여성과

부칙 <2013. 6. 11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479호,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성평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용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여성발전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7. 6. 23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임기만료·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의 위원장란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6 조례 제2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0. 2>

각종 위원회별 설치근거(제5조 관련)

관리 번호	위원회 명칭	위 원 장				설 치 근 거	위원장 성 명	비고
		시장	제1부시장	국·과장	기 타	근거법령		

[별지 제2호서식]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 목표율 달성도 분석(제5조 관련)

담당부서명	위 원 회 명	위원 성비				조치사항
		계	남	여	여성비율 (%)	
합 계						

[별지 제3호서식]

○○○○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제5조 관련)

00. 12. 31 현재

위 원 회 명 칭	위원구성			운영실적		담당부서
	계	당연직	위촉직	운영 횟수	수당지급액 (천원)	
계						

[별지 제4호서식]

각종 위원회별 운영 현황(제5조 관련)

(00. 12. 31 현재)

위원회명				담당부서				설치일									
설치법령·조례																	
주요기능																	
근거별				성격별				업무별									
법령	조례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기관 운영	보건 복지	산업 경제	환경 관광	재정 건축	건설 교통	문화 예술	농정 산림	축산 안전	
위원회 운영실적														위촉위원 임기			
구분	전년도 (00년)	현년도(00년)														위촉일	
		총계		1/4		2/4		3/4		4/4		만료일					
		서면	집합	서면	집합	서면	집합	서면	집합	서면	집합						
개최횟수 (회)																	
예산집행액 (천원)																	
출석률 (%)																	
위원별 위촉현황(상호 중복 없음)																	
분야 직별	합계 (명)	공무원				민간인											
		소계	직속 공무원	타기관 공무원	소계	사회· 민간 단체 추천	기업인 상공인	교수	언론인	법조인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의원	일반 주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당연직																	
위촉직																	
위원회 변동내역																	
설치		일				폐지		일									
신설		사유				폐지		사유									
소속위원 교체·증감																	
운영상 수범사례																	
향후 발전계획																	
비고																	